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
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동시에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,
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
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을
상실한 본 조례의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
액공제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,600원으로 상향
함.(안 제16조)
- 나.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
제함.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- 다. 기타
 - (1) 입법예고 (2022. 9. 15. ~ 10. 5.) 결과: 의견없음
 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250원”을 “8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600원”을 “1,6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<u>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: 100분의 20</u></p> <p>2. <u>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)의 경감률: 100분의 50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16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<u>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u>250원</u></p> <p>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</p>	<p>제16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800원</u></p> <p>2. ----- -----</p>

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600원

----- 1,600

원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- 시세감면조례 제16조 관련 -

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(안)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비용발생 요인: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
- 비용추계의 전제: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800원으로 상향, 전자고지&자동이체 1,600원으로 상향
-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입	○	△ 3,229	△ 4,037	△ 5,046	△ 6,307	△ 7,884	△ 26,503
	○						
	소계(a)	△ 3,229	△ 4,037	△ 5,046	△ 6,307	△ 7,884	△ 26,503
세출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b)						
□ 총 비용(a-b)		△ 3,229	△ 4,037	△ 5,046	△ 6,307	△ 7,884	△ 26,503

- 재원조달 방안 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국비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△ 3,229	△ 4,037	△ 5,046	△ 6,307	△ 7,884	△ 26,503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△ 3,229	△ 4,037	△ 5,046	△ 6,307	△ 7,884	△ 26,503

- 덧붙이는 의견
- 작성자: 재무국 세제과 세무7급 송유니(2133-3357)

II .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개정내용 :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

-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는 250원 ⇒ 800원(인상)
- 전자고지 & 자동이체는 600원 ⇒ 1,600원(인상)

○ 2022년 기준 세액공제 예상 고지건수: 총 4,242,640건

합 계	전자고지만	자동이체만	전자고지&자동이체
4,242,640	3,350,779	336,375	555,486

○ 산출기준

- 고지건수: 2022년 기준 세액공제 예상 고지건수
- 연도별 세액공제 고지건수 증가비율: 매년 25% 증가 가정
(단위: 천건, 백만원, %)

구분	평균	'23	'24	'25	'26	'27
건수	8,705	5,303	6,629	8,286	10,358	12,948
증감액	5,301	3,229	4,037	5,046	6,307	7,884
증감율	25	25	25	25	25	25

○ 산출결과

- 개정시 추가비용('22년 기준): 2,583백만원(1,255백만원 ⇒ 3,838백만원)
[전자고지(1,843백만원), 자동이체(185백만원), 전자고지&자동이체(555백만원)]
- 연도별 세액공제 산출 비용
(단위: 백만원)

1차년도 ('23년)	2차년도 ('24년)	3차년도 ('25년)	4차년도 ('26년)	5차년도 ('27년)	합 계
3,229	4,037	5,046	6,307	7,884	26,503

※ 매년 25%씩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대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